

서울고등법원 2020. 10. 20 선고 2020나2000023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0. 10. 20 선고 2020나200002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8가합281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건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김재영

변론 종결2020. 8. 20.

판결 선고2020. 10. 20.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8가합281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억 8,922만 5,919원과 이 돈에 대하여 2018. 5. 4.부터 2020. 10. 2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억 9,708만 1,804원과 이 돈에 대하여 2018.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의 모친 C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개시

원피고의 모친 C 소유 부천시 소사구 ○ 대 690.8㎡(이하 'K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Q)에서 2008. 10. 27. 경매절차개시결정을 했다.

원고는 2011. 8.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1느단600)에 모친 C를 금치산자로 선고한다는 심판을 청구했다.

나. C의 물적 담보 제공

C는 2012. 1. 4. 차남인 피고의 H조합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이하 '피고의 대출금'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 서울 성동구 I 대 315.4㎡, J 대 152㎡ 및 그 지상 건물(이 부동산들을 통틀어 이하 'G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H조합,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C 소유 K 부동산의 매각과 피고의 이행각서 교부

피고는 2012. 6. 11. K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매각대금 14억 5,068만 원을 납부함으로써 K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1느단600)은 2013. 6. 25. C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다는 심판을 했다.

피고는 2014. 4. 25.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행각서(이하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R 2014년 증서 제682호로 공증을 받아, 한정치산자 C의 후견인 D에게 교부했다.

이행각서

B은 부천시 소사구 O호 C의 토지 매각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 전액 납부한다는 이행각서이다.

라. C의 G 부동산 피담보채무의 대위변제와 사망

C는 2016. 8. 22. 피고를 대위하여 H조합에 피고의 대출금 7억 원, 이자 375만 9,129원의 합계 7억 375만 9,129원을 상환하고, 2018. 1. 14. 사망했다. 원고와 피고가 C를 공동으로 상속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 C는 피고의 대출금채무에 관한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를 대위하여 그 대출금채무를 변제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대출금채무 상당액의 구상권이 있었고, 그 중 2분의 1을 원고가 상속했다.

그리고 피고는 이행각서의 작성·교부로서 자신이 C 소유 K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로 약정했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C가 K 부동산 양도소득세 합계 4억 9,040만 4,480원을 납부했다. 따라서 피고는 C에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4억 9,040만 4,4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2분의 1을 원고가 상속했다.

2) 피고 주장 C는 자신 소유 부천시 소사구 K에 있는 건물 등을 피고에게 매도했음에도, 1990년부터 2000년까지 그 건물 등의 임료 합계 7억 5,132만 원을 받아 임의로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했으므로, 피고에게 그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가 C의 요청에 의하여 C의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주민세를 대납했으므로, C는 그 양도소득세·주민세 상당의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C는 피고에게 위 임료 상당액을 반환하고, 위 양도소득세·지방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서, 그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G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상환했을 뿐이다.

더욱이 부천세무서장의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에 의하면, 원고의 상속지분은 30.86%, 피고의 상속지분은 69.14%이다. 따라서 원고는 C의 구상금채권 중 30.86%를 상속했을 뿐이다.

나. 인정사실

1) C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 C는 1990. 5. 31. 피고에게 부천시 소사구 S 대 810.5m², T 대 69.8m² 및 그 지상 건물(이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U빌딩'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작성하고, 1990. 8. 30. 피고 앞으로 U빌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U빌딩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작성했다.

2) C 소유 K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과 경매절차개시 피고와 피고의 처 L은 'M'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05. 12. 1.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과 이동통신영업에 관한 위탁대리점계약(이하 '위탁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C는 2005. 12. 1. L의 위탁대리점계약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C 소유 K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8,000만 원, 채무자 L, 근저당권자 N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N 앞으로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피고와 L이 위탁대리점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N은 2008. 10.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Q)에 근저당권에 기하여 K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08. 10. 27. K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개시결정을 했다.

3) C 소유 G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2011. 8.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1느단600)에 모친 C를 금치산자로 선고하고 후견인으로 자신을 선임해 달라는 청구를

했다. 이에 대한 심판 전인 2012. 1. 4. C는 자신 소유 G 부동산을 피고의 H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4) C 소유 K 부동산의 매각 피고는 C 소유 K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6. 11.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대금 14억 5,068만 원을 납부하고 K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C에게는 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이하 'K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이라 한다)가 부과되었다. 부천시 원미구는 2013. 4. 24. C에 대한 위 지방소득세를 청구채권으로 G 부동산을 압류했다.

원고의 위와 같은 금치산자선고 청구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1느단600)은 2013. 6. 25. C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함과 아울러 원고의 후견인 선임청구를 기각한다는 심판을 했다. 그 법정후견인으로는 C의 최근친자이자 연장자인 원고가 되었다. 피고는 C의 차남으로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2013. 10. 1. 한정치산자 C의 후견인을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하고, 2013. 10. 22. 원고를 상대로 후견인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3. 11. 5. 원고의 후견인직무집행을 정지시키면서 직무대행자로 D를 선임한다는 결정(2013즈기80)을 했다.

한편, C가 K 부동산의 위와 같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대한민국은 2013. 12. 12. C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채권으로 G 부동산을 압류했다.

5) 피고의 이행각서 작성·교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2014. 3. 4. 피고의 후견인변경청구를 기각한다는 심판(2013느단972)을 하자, 피고가 이에 인천지방법원(2014브35)에 항고했다.

피고와 피고의 처가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C가 피고의 처를 위해 담보로 제공했던 K 부동산의 매각으로 C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아, 2014. 4. 9. C 소유 G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4. 4.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R 2014년 증서 제682호로 공증을 받아, 한정치산자 C의 후견인 D에게 교부했다.

이행각서

B은 부천시 소사구 O호 C의 토지 매각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 전액 납부한다는 이행각서이다.

- 1) B은 이행각서대로 성실히 지키기 위하여 부천시 소사구 S, O호 처분권한을 D에게 준다.
- 2) C 소유 서울 성동구 I호 공매일 6월 9일 이전 2014년 5월 20.일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 3)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D은 B에게 이행각서를 돌려준다.
- 4) D, B은 이행각서를 성실히 지키기 위하여 공증을 한다.

피고는 2014. 6. 19. 양도소득세 중간예납 3,000만 원, 2014. 6. 25. 양도소득세 중간예납 2,000만 원을 각 납부했다.

- 6) C의 K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부와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 인천지방법원(2014브35)은 2014. 8. 21. 피고가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받아들여 C의 후견인을 D으로 변경했다. 원고가 재항고했지만, 대법원(2014스167)은 2014. 12. 5.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했다.

C의 후견인 D은 2015. 1. 14. 종합소득세 수시고지분 1,571만 1,770원, K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간예납 398만 8,230원, 2016. 6. 3. K 부동산 양도소득세 4억 7,070만 4,480원을 납부했다.

원고는 2015. 12. 17.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C의 후견인을 D에서 E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했다. 그 심판이 나기 전인 2016. 8. 22. C의 후견인 D은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를 대위하여 H조합에 대출원금 7억 원, 이자 375만 9,129원의 합계 7억 375만 9,129원을 상환했다.

D은 2016.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6카합10188)에 이행각서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했고, 2016. 11. 2.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원고의 위와 같은 후견인변경청구에 대하여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2015느단1486)은 2017. 6. 28. 결정으로 후견인을 D에서 변호사 F로 변경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 15 내지 19, 22호증, 을 제1 내지 4, 6, 16 내지 21, 73 내지 7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법원의 판단

- 1) 구상금청구 부분에 관하여 앞의 인정근거 등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추가로 알 수 있다. 이런 사정과 앞의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C는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G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를 대위하여 그 채무를 변제했고, 원고가 피고와 공동으로 C를 상속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대위변제액 상당 구상금채권 중 2분의 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가 U빌딩 차임 상당을 개인적으로 소비했는지

을 제22 내지 27호증은 피고가 U빌딩 임차인들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이고, 을 제28 내지 38호증은 U빌딩 임료 내역서이며, 을 제42 내지 52호증은 C 생활비 등 지출 내역서이다. 이 서증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C가 피고에게 U빌딩을 매도한 이후 10년 동안 그 임료를 받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했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피고에게 U빌딩 임료 상당의 채무를 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② 피고가 C의 U빌딩 양도소득세·주민세를 대납했는지

을 제53 내지 61호증은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 거래 내역서일 뿐이다. 각 영수증인 을 제39, 40호증에 나타난 U빌딩의 양도소득세·주민세가 실제로 납부된 시기나 그 구체적인 액수 등을 확인할 수 없다. 위 각 영수증을 피고가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C를 위해 이를 대납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로는 피고가 C를 위해 U빌딩의 양도소득세·주민세를 대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상속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분은 민법의 규정에 따르고,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이와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부천세무서장이 원피고에게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통지를 하면서 원고의 상속지분을 30.86%, 피고의 상속지분을 69.14%로 명시했지만, 이는 상속세 신고 시점에서 C의 상속재산 중 원피고가 각각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속세액의 비율을 정한 것이고, 이로써 원피고의 각 상속분이 민법의 규정과 다르게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C가 유언으로써 원피고의 각 상속분을 민법의 규정과 다르게 정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피고는 동순위의 상속인으로 그 상속분은 균분하므로,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중 2분의 1을 상속했다.

2)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앞의 인정근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추가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과 앞의 모든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C의 후견인 D을 통해 C에게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K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자신의 최종적인 부담으로 납부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C가 후견인 D을 통해 불가피하게 이를 납부했으므로, 피고는 C에게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행각서가 C에게 효력이 있는지

D은 C를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이행각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D은 2013.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결정(2013즈기80호)에 의하여 C의 후견인 직무집행대행자로 선임되어 C의 적법한 대리인이 되었다. 더욱이 위 결정은 당초 피고가 제기했던 원고에 대한 후견인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따른 것이었다. 그래서 피고는 D이 C의 후견인으로서 C를 대리한다는 것을 알고서 D과 협의하여 이행각서를 작성해 D에게 교부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D도 G 부동산 소유자인 C를 대리한다는 의사로 피고의 이행각서 작성·교부에 관여했다고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D이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 자신을 위해 관여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과 그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행각서는 C에게 효력이 있다.

② 이행각서 작성의 경위 내지 동기, 목적

피고와 피고의 처 L이 함께 N의 위탁대리점인 'M'을 운영하면서 그 위탁대리점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K 부동산이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C에게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했다. 피고와 L은 부부이자 M의 공동사업자로서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었다. C 소유 K 부동산 매각대금의 배당으로써 'M' 채무가 소멸하여 이익을 얻었음에도, 피고나 피고의 처 L은 그 채무 상당액을 C에게 지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 대신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일단 단순히 대납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부담하여 납부하기로 D과 합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피고의 K 부동산 양도소득세 일부 납부

피고는 이행각서 작성 이후 K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의 일부로 합계 5,000만 원을 직접 납부했다. 그런데 피고가 C 또는 D에게 위 5,000만 원에 대한 구상이나 정산을 요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도 자신에게 K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K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의 일부를 납부하고, 이후에도 이에 대한 구상 등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G 부동산 공매절차를 중단시키려는 목적에서 한 통정허위표시 여부

먼저 C 소유 K 부동산이 매각되어 C가 K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의 입장에서 K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었음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반면 D이 피고와 공모하여 허위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시함으로써 세무서를 기망하는 불법행위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제1심 증인 D은 'G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막기 위해 국세청에 보여줄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행각서의 작성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지만, '피고는 이행각서에 따라 K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기로 했고, 실제로 피고는 그 일부를 납부하기도 했다. 피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K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D에게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또한, D이 작성한 메모(을 제5호증)에는 '경매 막기 위하여', '이행각서 취소(무효) 소송', 'D 상대'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이에 관하여 제1심 증인 D은 '이행각서에 기해 피고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더니 피고가 굉장히 막 대들기에, 억울하면 법적으로 소송해라는 취지의 대화를 하면서 혼자 작성한 메모에 불과하고, 이행각서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실제로 D은 C를 대리하여 이행각서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청구채권으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고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는 점 등에서, 위 증언 내용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또, 이행각서가 G 부동산의 공매절차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것과, 피고가 이행각서에 따라 K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기로 한 것은,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행각서가 '오로지' G 부동산의 공매절차 중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라면 피고가 굳이 K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을 대납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K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의 일부로 합계 5,000만 원을 직접 대납했고, 이후 C에게 구상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C를 대리한 D과 피고가 진정한 의사로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C의 손해 발생

피고는 이행각서에 따라 K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을 대납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중

5,000만 원만 납부했을 뿐, 나머지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C는 직접 합계 4억 7,469만 2,710원 [= 2015. 1. 14. 납부 398만 8,230원(갑 제5호증의 2) + 2016. 6. 3. 납부 4억 7,070만 4,480원(갑 제5호증의 3)]을 납부했다. 다만, C가 2015. 1. 14. 납부한 종합소득세 수시고지분 1,571만 1,770원(갑 제5호증의 1)을 K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가 K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을 최종 부담하기로 약정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K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여 C나 그 상속인이 그 납부의무를 면하는 경우에도, C나 그 상속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이행각서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C는 위 4억 7,469만 2,710원의 손해를 입었다.

⑥ 상속분

피고는, 앞서 본 부천세무서장의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근거로 하여, 피고가 C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C의 손해배상채권 중 30.86%만을 상속했다고 다툰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2분의 1을 상속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C에게 구상금으로 7억 375만 9,129원, 이행각서에 의한 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4억 7,469만 2,7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C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과 손해배상채권 중 각 2분의 1을 원고가 상속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억 8,922만 5,919원[= 3억 5,187만 9,564원(= 구상금 7억 375만 9,129원 $\times$ 1/2) + 2억 3,734만 6,355원(= 손해배상금 4억 7,469만 2,710원 $\times$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 부분의 피고에 대한 송달로써 그 이행을 청구했다. 그리고 피고는 적어도 제1심에서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제1심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는 정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8,922만 5,919원과 이 돈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8. 5.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0.까지 민법에 규정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정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재오

판사박성윤

판사이의영